

작년 '119 허위신고', 30% 증가...946건 중 4건만 과태료 부과

지난해 과태료 금액 상향에도 증가세 5년 6개월간 총 5250건...38건만 부과

지난해부터 119에 허위 또는 장난 신고 시 부과되는 과태료 금액이 최대 500만원으로 늘었는데도 허위신고 건수는 전년보다 오히려 30%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지난해 허위신고된 946건 중 실제로 과태료가 부과된 것은 0.46%인 4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허위신고를 근절하기 위해 제도를 손질했음에도 정작 소방당국이 대응에 소홀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전봉민 국민의힘 의원(부산 수영구)이 소방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올해 6월까지 119 허위신고 건수는 총 5250건이다.

연도별로 2017년 1062건이었던 허위신고 건수는 2018년 1100건으로 소폭 늘었으나, 2019년 919건, 2020년 733건으로 줄었

다. 그러나 지난해에는 946건으로 전년보다 213건(29%) 더 늘었다.

올해 상반기에는 총 490건이 허위신고로 파악됐다. 하반기에도 상반기와 비슷하게 증가세가 유지된다면 올해에는 총 1000여 건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허위신고된 946건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도가 136건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강원 122건, 경북 109건, 전남 92건, 충남 91건, 서울 78건, 경남 68건 등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허위신고에 과태료가 부과된 건수는 최근 5년 6개월간 총 38건에 그쳤다. 전체 건수의 0.72%에만 부과된 셈이다.

연도별 부과 건수와 비율을 보면 ▲2017년 8건(0.75%) ▲2018년 9건(0.82%) ▲2019년 13건(1.4%) ▲2020년 4건(0.55%)

▲2021년 4건(0.42%)이다. 올해 상반기 490건 중에서는 단 한 건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았다.

국회가 앞서 허위신고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허위신고 과태료 상한을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119법' 및 '소방기본법'을 개정했지만, 정작 소방당국이 소극적으로 대처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소방청은 지난 2020년 국회에서 개정안을 논의할 당시 법률안 검토의견에서 "거짓으로 응급상황을 알려 악의적으로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자에 대한 과태료 상향 조정 필요성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실제 부과된 과태료 액수도 턱없이 낮아 법 개정 취지를 퇴색시켰다는 지적도 있다. 지난해 허위신고로 부과된 과태료 액수는 총 700만원으로, 1건에 100만원, 3건에 각각 200만원이 부과됐다.

전봉민 의원은 "허위·장난 신고는 불필요한 소방력 낭비를 야기하고 실제상황 발생 시 대처가 지연되면서 정말 도움이 필요한 분들의 생명과 재산을 심각하게 위협하게



“소방기관은 허위신고가 장난임정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선욱기자

‘업무상 재해’ 판결 확정받고 회사에 낸 손해소...최종 패소 이유?

현대중공업 용접 중 파킨슨 병 진단...업무상 재해 인정 후 손해소

행정소송에서 업무상 재해가 인정된 판결이 확정된다고 해도 회사의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정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약 대법관)는 A씨가 현대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 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대법원 1부는 B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도 원고 패소를 확정했다.

이번 사건의 피고인 현대중공업은 2019년 6월 한국조선해양을 설립하고 지주회사체제를 만들었다. 이후 현대중공업을 물적분할로 설립했고, 이 사건 소송으로 인한 권리의무관계는 새로 설립된 현대중공업이 사실상 귀속된다.

1995년 현대중공업 용접공으로 취업한 C씨는 2005년 7월 통증을 느껴 병원에 방문했다. 뇌손상을 진단받은 C씨는 2007년 4월 퇴사했다. 이듬해에는 파킨슨병을 추가로 진단받았다.

C씨는 용접작업을 하던 중에 가스에 노출돼 뇌손상 등 상해를 입어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했다. 파킨슨 병 진단 전후로 두 번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을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용접봉에는 망간이 들어있는데 인체에 유해할 수 있다고

한다. 이후 C씨는 법원에 행정소송을 냈고, 법원은 망간에 노출되는 업무를 2개월 이상 종사한 사람에게 파킨슨병 진단이 있으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든 규정도 따라 요양을 허가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C씨는 판결 이후 2015년 3월 사망했다.

A씨 등 C씨 유족은 현대중공업이 업무상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보호의무를 다하지 않았으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용접봉 제조사 B사를 상대로는 용접봉 제조물 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현대중공업 상대 소송 1심은 C씨가 실제 망간에 노출된 이상 현대중공업이 보호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파킨슨병의 발생과 현대중공업의 보호의무 위반 사이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보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법원에는 파킨슨병의 원인을 알 수 없거나 단순한 가능성을 추정하는 의학적 소견들이 제출됐다. A씨 등은 행정소송에서 파킨슨병과 업무 사이 인과관계가 인정됐기 때문에 이 사건에서도 같은 결론이 나와야 한다고 한

다고 항소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행정소송에서 업무상 재해가 인정된다는 판결이 확정됐다고 해서 기업의 보호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반드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행정소송을 심리한 법원은 파킨슨병을 업무상 재해로 봤지만, 2개월 이상 망간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 파킨슨병 진단을 받을 경우 업무상 질병으로 보도록 하는 규정의 영향을 받았다고 대법원은 설명했다.

A씨의 망간 노출과 파킨슨병 사이 인과관계는 행정소송에서도 인정되지 않았고, 이번 손해배상 사건 심리 중에 제출된 증거들에도 그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이다.

즉 행정소송의 근거가 된 산재보험법상 인과관계 인정범위가 손해배상 사건에서 보호의무 위반으로 인한 인과관계 인정범위보다 넓으므로 업무상 재해가 인정된다고 해서 손해배상 책임이 반드시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다.

B사 상대 소송에서도 1심은 C씨가 사용한 용접봉은 표준 규격에 부합하는 제품이기에 때문에 결함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판단은 대법원까지 유지됐다.

이슬비기자

나홀새 주차 차량 3대에 불 지른 40대 검거

누범기간 중 또 범행...“스트레스 풀려고 불 질렀다”

나홀 새 주차 도둑에 주차된 차량 3대에 잇따라 불을 지른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남부경찰서는 27일 차량 3대에 잇따라 불을 지른 혐의(일반건조물방화)로 A(40)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전날 오후 10시 50분께 광주 남구 방림동 도로가에 세워진 승용차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앞서 지난 23일과 24일 심야에도 남구 백운동·봉선동 등지에 주차된 차량 2대에 불을 지른 혐의도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경찰에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불을 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불을 붙인 옷 가지를 차량에 덮는 수법으로 범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과거에도 비슷한 범행을 저지르다 복역한 바 있으며, 누범 기간 중 또다시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전날 오후 11시 30분께 남구 백운동 일대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도주와 재범 우려가 높고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기동취재본부

광주 진곡산단 금형제조공장 화재

27일 오전 2시 8분께 광주 광산구 진곡동 진곡산업단지 내 한 금형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나 소방당국의 의해 42분 만에 꺼졌다.

이 불로 공장 1개 동(940㎡) 중 약 310㎡가 타거나 그을려 소방서 추산 414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났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공장 중앙에 있는 사무실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확인을 조사하고 있다.

임형택기자

신문인쇄 전문기업 (주)남도프린테크

(주)남도프린테크는 신문사 법인설립, 신문발행업 등록, 편집, 인쇄까지 토탈 서비스 가능한 업체입니다.

믿고 맡겨주시면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광주·전남 최초로 신문윤전판 출력시스템 도입
- 월등한 색상 구현력에 더러움 현상은 최소화!
- 최상의 인쇄 품질로 고객 만족을 실현하겠습니다

(주)남도프린테크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로803번길 93-10(용동) 평동산단 3번도로 끝
Tel : 062)943-0135~6 Fax : 062)943-0134 담당자 : 010-2656-4747(장상문 전무)

